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0월 21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 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 체납처분 중지절차의 객관성 확보

개정안은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생략) <u><신 설></u> ② (생략)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는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중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실무적으로 일선 담당 공무원이 체납처분 중지를 하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의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 산정 시, 전문적인 분석·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담당자에게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시 전문적인 분석·판단 미흡 등으로 감사·징계의 부담이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체납 중지 처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객관성·정당성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체납중지 처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중지 절차의 객관성 및 정당성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붙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채납처분의 중지)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6조(채납처분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